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57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정일영 · 권향엽 · 이훈기
손명수 · 송재봉 · 이용선
문금주 · 황명선 · 박선원
진성준 · 김종민 · 이춘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3항에”를 “제15조제4항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계약보증금) ① (생략)</p> <p><u><신설></u></p> <p>② · ③ (생략)</p> <p>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p> <p>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u>제15조제3항</u>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p>	<p>제15조(계약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p> <p>① ----- ----- ----- ----- ----- ----- ----- ----- ----- -----</p> <p>1. ----- -----<u>제15조제4항</u> -----<u>에</u>-----</p>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나. (생략)

<신설>

<신설>

다. (생략)

② ~ ⑦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

마. (현행 다목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